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상주 BTJ 열방센터 방문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연장

경북 상주 BTJ 열방센터를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명령을 연장하여 시행합니다.

2021년 1월 12일 경기도지사

- 1. 적용지역: 경기도
- 2. 처분기간 : 〈당초〉 '21. 1. 8 ~ '21. 1. 11. → 〈연장〉 '21. 1. 12 ~ '21. 1. 17.
- 3. 처분당사자 : '20. 11. 27. 이후 경북 상주 BTJ 열방센터의 예배, 소모임, 수련회, 캠페인, 기타 명목 불문 관련 모임이나 행사, 업무에 참석하거나 방문한 경기도민
- 4. 처분내용 : 상기 당사자는 '21. 1. 17일 까지 지체 없이 감염여부 검사를 받고, 역학조사 요청에 응할 것

상세내용	근거규정
- 행정명령 후 지체 없이 감염 여부 검사를 받을 것 - (위반시) 300만원 이하 벌금	- 감염병예방법 제42조제2항제3호 - 감염병예방법 제80조제5호(벌칙)
- 역학조사(감염병 환자 등의 인적사항, 감염병의 감염원인 및 감염경로 등 조사)에 응할 것 - (위반시)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 벌금	감염병예방법 제18조제3항동법 시행령 제12조제1항감염병예방법 제79조(벌칙)

- 5. 처분사유 : 지역사회 집단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긴급한 방역 대응 필요
- 6. 효력발생일 : 2021년 1월 12일 ~

- 7. 처분서의 교부요청 : 처분 당사자는 「행정절차법」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- 8.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「행정심판법」제23조제1항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「행정소송법」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- 9.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79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, 제80조의제5호에 의한 3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그 위반으로 감염이 확산되어 발생하는 방역비용 등 모든 비용에 대하여 구상청구 될 수 있습니다.
- 10. 후속조치 및 문의처 : 도내 시·군 소재 보건소 끝.